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231420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8. 20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21.48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3 청구원인, 변경된 청구원인,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이원재

별지